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3.(수) 12:00 / 배포 2025. 9. 3.(수) 08:30 < 9. 4.(목) 조간 >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 지원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기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 요구 금지 -
- 130억 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사업자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 9. 1.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이상 미국),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 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대한민국)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 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등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정 방안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2024. 10. 31.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5. 1. 22.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5. 2. 10.(조간) 보도자료(공정위,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참고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25. 4. 7.부터 5. 7.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상생방안은 크게 ^①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②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 개 중소사업자 지원 계획), ^③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 원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는 칩 설계, 회로 검증,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설계 등다양한 과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반도체와 전자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
- ** 브로드컴은 13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10월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21년 11월 동의명령(Consent Order)으로 사건 처리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 이다.

<붙임1>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요

<붙임2>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붙임3>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박정웅 (044-200-4514)
		담당자	사무관	김건주 (044-200-4520)







붙임 1 보로드컴 동의의결 개요

동의의결 경위

- □ (신청 경위)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2024, 10, 31,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2025. 1. 22.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다.
 - *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이상 미국). ▲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 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대한민국)
-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등
- □ (의견 수렴) 이후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2025. 4. 7.부터 5. 7.까지 한 달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 (최종 의결) 동의의결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다른 사업자 보호 효과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2025. 9. 1. 동의의결 인용을 결정하였다.

<브로드컴 동의의결 경과 요약>

ㅇ 2024년 10월 31일	브로드컴, 동의의결 신청
ㅇ 2025년 1월 22일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ㅇ 2025년 3월 27일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ㅇ 2025년 4월 7일 ~ 5월 7일	공정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ㅇ 2025년 9월 1일	공정위, 최종 동의의결 인용결정

| 동의의결 주요 내용

- □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 개선) ^①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②과반수 점유율 요건 부과 금지, ③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과 금지, ④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 **(상생 지원)** ^①상생기금 130억 원 출연 및 ^②반도체 전문가·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 ③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국내 중소사업자 인프라 지원, ④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국내 중소 사업자 홍보활동 지원

< 최종 동의의결 주요내용 >

구분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			
I.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거래상대방(국내 STB 제조사)에 유료 방송사업자의 입찰·수의계약 참여 시 브로드컴의 SoC가 탑재된 STB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려고 하는 거래상대방과 신청인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을 거래상대방 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금지 	· 의결서 송달일 후 즉시 이행 ·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해부터 그 이후 6년 동안 매년 11월 30일까지 이행 보고서 제출(총 7회)			
과반수 점유율 요건 부과 금지	상대방에게 '과반수 점유율 요건'을				
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과 금지	• 거래상대방이 '과반수 점유율 요건'을 거절하거나 또는 경쟁사업자의 SoC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가격·비가격적 혜택을 철회하는 등의 행위 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	 의결서 송달일 후 30일 이내 시스템 구축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해부터 그 이후 6년 동안 교육 진행 및 매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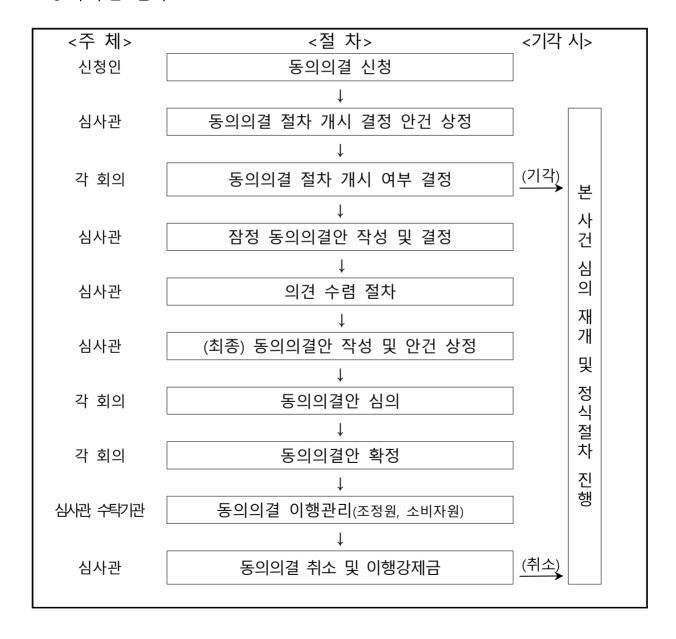
구분	구체적 시정방안	이행계획			
п. 상생기금 조성 및 상생 지원 방안					
상생기금 조성	• 130억 원 출연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하 '협회')를 통해 기금 운용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에 상생기금 총 130억 원 출연			
반도체 전문가·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 (예산 10억 원)	IP-SoC 통합 설계에 관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실습 교육(연 3회) 지원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분기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5개년 동안 이행 ・이행기간 동안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보고서 제출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국내 중소사업자 인프라 지원 (예산 110억 원)	• 중소사업자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제공(5년간 연 40여 개 중소사업자 지원 계획) • EDA 프로그램 원격 제공을 위한 전용 서버 구축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국내 중소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 (예산 10억 원)	·중소사업자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 참여, 홍보관 조성(기업 공동관 설치, 제품 전시 등) 및 운영 지원	・이행기간 동안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보고서 제출			

붙임 2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 동의의결 개요

o 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 동의의결 절차



붙임 3 │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 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